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13호      2022. 2. 1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2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내역 ----- 2
- 삼척시 고시 제23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4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6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93호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210호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211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2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 22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변경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28-63 (교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0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a.gakr](http://www.jusa.ga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주소	부여 2건, 변경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6-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47-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창석로 28-63 (교동)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길 22-5	20220218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도로 구간내 주요시설 (청솔, 석미아파트) 활용 도로명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20220218	기존 유지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변경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20220218	삼척로 3334-54로 합병	20090626	구 7번국도 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34-54	20220218	삼척로 3334-54로 합병	20090626	구 7번국도 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 - 23호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삼척시장

- 고시일 : 2022. 2. 18. (금)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 동의 받은 날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서면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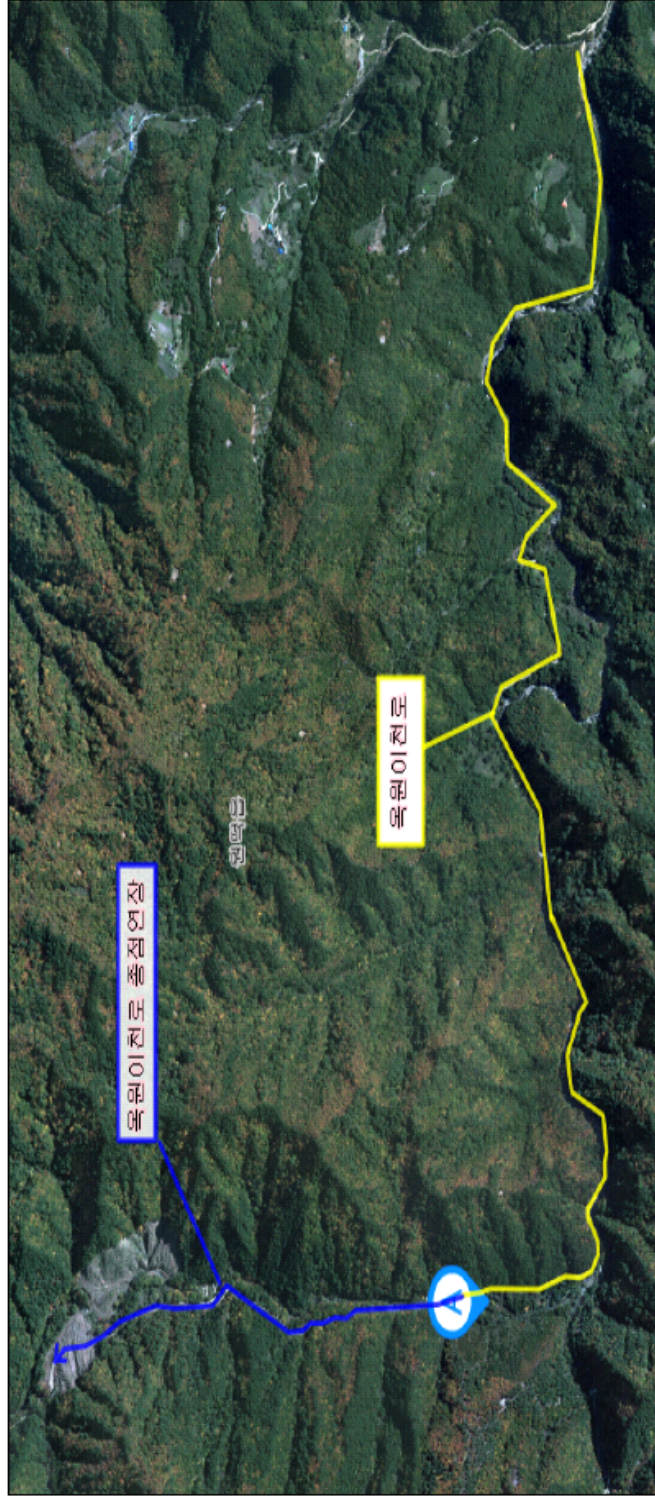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변경 전 (기존)	옥원이천로	로	원덕읍	옥원리 99-3	이천리 산 357-1	12484	10	20	1-0→ 2504-0	도로구간 증점연장	
	옥원이천로	로	원덕읍	옥원리 99-3	이천리 산 323	13844	10	20	1-0→ 2638-0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고시 제 2022 - 24호

##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 삼척시장

1. 사업명 : 장호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주체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나폴리 대표 임언아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67, 301호(교동, 씨프라자)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산141 외 3필지
  - 사업면적 : 24,805㎡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부지 : 46필지 16,117.4㎡
    - 기타 부지 : 14필지 4,791.6㎡
    - 단지내 도로 : 3,896㎡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0. 6. 1. ~ 2021. 12. 31.
  - 변경 2020. 6. 1. ~ 2022. 12. 31.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삼척시 공고 제2022 -193호

##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삼척시 성내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의 주민·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 등 역량 강화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삼척시장

### 1. 공모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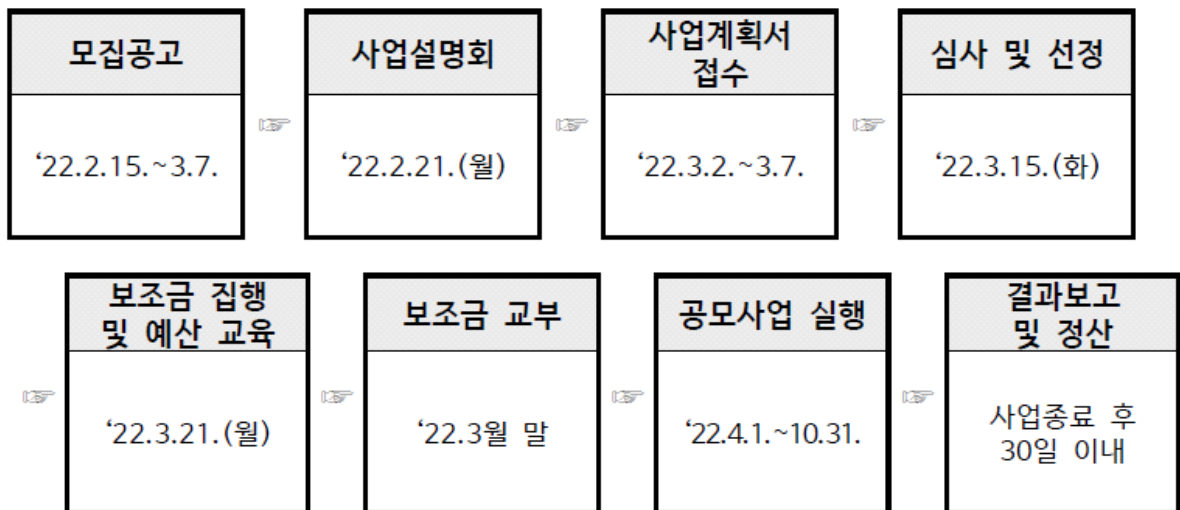
- 공 고 명 :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7.(월) 18:00까지
- 대 상 지 : 성내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원규모 : 팀당 2,000천원 ~ 5,000천원 (총사업비 20,000천원)  
※ 200만원 5팀(자부담 없음), 500만원 2팀(자부담 10%)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 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생활기반(사업자 등)을 둔 사업자
  - 도시재생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단체(임의 단체 포함)
- 공모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율 공모  
※ 제외 대상 : 주민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지원 분야(예시)

분야	사업 예시	내 용
사회적 재생	공동체 결성·운영	○ 마을 봉사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 결성 및 운영
	세대 공감 프로그램	○ 세대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스토리텔링	○ 지역 역사 스토리 정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제적 재생	창업 아카데미	○ 청년 등 지역 창업 유도 프로그램
	마을기업 활성화	○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
	공가 활용 프로그램	○ 지역 공가 조사 및 활용 사업
	지역 행사 기획	○ 지역특성 반영된 소규모 행사 기획·운영 (단순한 일회성 행사 제외)
물리적 재생	노후 시설 정비	○ 가로 환경 정비 ○ 테마 가벽 설치 등
	지역특성화 시설 정비	○ 소규모 지역자원 활용 공간 조성
	도시재생 모니터링	○ 보행 환경 등 지역을 개선 방안 제시 등

※ 위 제시된 사업 이외에도 공모대상에 부합한 사업이면 공모 신청 가능

2.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2. 21.(월)
- 장 소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취지, 진행 절차, 진행내용 등에 관한 설명
  - 구비서류 및 작성 방법 안내 등
  - 사업신청서, 예산내역 등의 검토 및 수정 보완 사항 전달
  - 사업 아이템, 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컨설팅 진행 등

## □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삼척시 성내길 1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도시재생대학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식 :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별첨 참조)

## □ 제안사업 심사

- 서류심사(1차)
  - 제출 서류 구비 및 중복지원 여부 등 공모서류 기본여건 검토
  - 사업 취지의 적합성 및 예산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 결격사유 포함 시 1차 서류에서 탈락
- 본 심사(2차)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3인 이내 구성 후 심사기준에 맞춰 평가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등) 및 기대효과(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2. 3. 15.(화) 예정
- 결과발표 : 개별통보

**□ 보조금 사용 교육**

- 일 시 : 2022. 3. 21.(월)
- 장 소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주요내용 : 예산집행, 정산 등에 관한 컨설팅

**3.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 모임 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동일주체에 대한 동일 사업 및 기존 보조금(국/도/시)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선출직 후보 포함)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사업
-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영리목적 사업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함.
- 선정사업의 대표제안자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및 실무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사업변경, 정산 등 사업 수행의 행정 처리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협력 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심사, 보조금심의, 컨설팅에서 나온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 실행

- 선정사업의 제안자 및 단체는 강사, 자문, 원고작성, 회의참석, 활동비 등 수당 수급 불가
- 사업 기획 과정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신청자(팀) 우선 선발
- 공모사업 기획·신청·진행 과정에서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 등은 서류심사에서 탈락 또는 교부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 및 사업이 중지 될 수 있음
  -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집행 금액 환수처리
  -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능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 법령·조례 위반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 기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문 의 처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76-0327)
- 삼척시 전략사업과 (☎570-4045)

<서식 1>

#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	단체명	* 단체가 아닌 경우 '개인성명'기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기입	대표자	
	전화 (핸드폰)		F A X	
	주소	(우편번호 :    -    )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사업명		
	지원일자		지원금액	천원
신청사업 개요	공모사업명		삼척시청 관련실과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년도 보조금 :	천원
담당자	직위 :	전화 (휴대폰)		
	성명 :	E-mail		

2022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 5. 예산계획

#### 1) 현물 및 재능활용계획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 2) 비목별 예산 계획

구분	예산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합계			
보조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 3) 월별 예산집행계획

구분	합계	월	월	월	월	월
보조금						
자부담금						
계						

### 6. 사업의 기대효과

- 
- 
- 

### 7.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 전년도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 전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또는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서술·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법질서확립 추진 주민의식 강좌 운영

- 추진기간 : '○○. ○월 ~ ○월
- 운영실적 및 참석인원 : 3회 300명(일반시민 200, 단체회원 100등으로 기재)
- 소요금액 : 10백만원(보조금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

○

□ 해당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해당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여권 신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추진기간 : . 월 ~ . 월
- 운영계획 : 3회 300명(일반시민 200, 단체회원 100등으로 기재)
- 소요금액 : 10백만원(보조금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

○

○

○

<저식 2>

# 2022년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 서명부

사업 명칭	
사업 기간	
참여 기관	
주최·주관	삼척시·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 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 당 직 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3>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민원신청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연락불가로 인한 자료 제공 불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증빙자료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동의함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 2022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증빙자료
- 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제29조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
- 제공 기관 : 삼척시,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서식 4>

## 이행각서

상기 본인(\_\_\_\_\_)은 삼척시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추진하는 2022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삼척시·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삼척시장 귀하

## 삼척시 공고 제2022-210호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삼척시장

##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매각 협의 대상 및 시점 추가(안 제5조제2항)
- 시설물의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마련 (안 제5조제3항, 제4항)

### 3. 입법예고기간 : 2022. 2. 17. ~ 3. 10.(21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에너지과

○ 전화 : 033-570-3745

○ FAX : 033-570-3181

○ E-mail : jhh0801@korea.kr

## 5.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시정소식-뉴스/미디어-입법/광고/고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를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협의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 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동의 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설물의 관리)</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 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매각 협의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 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 동의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한다.</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 - 211호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관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17일

# 삼척시장

### 1. 행정예고 목적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3. 공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게시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2. 17. ~ 2022. 3. 8.(20일간)

### 5. 지정내역 : 붙임 2 참조

대상 학교	위 치	길이	비고
삼척초등학교	삼척시 교동 598-9 일원	50m	운영시간 08:00 ~ 18:00
정라초등학교	삼척시 정상동 469-15 일원	40m	운영시간 08:00 ~ 18:00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3. 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삼척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570-3145)

라. 보내실 곳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70-3478)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붙임2.

【삼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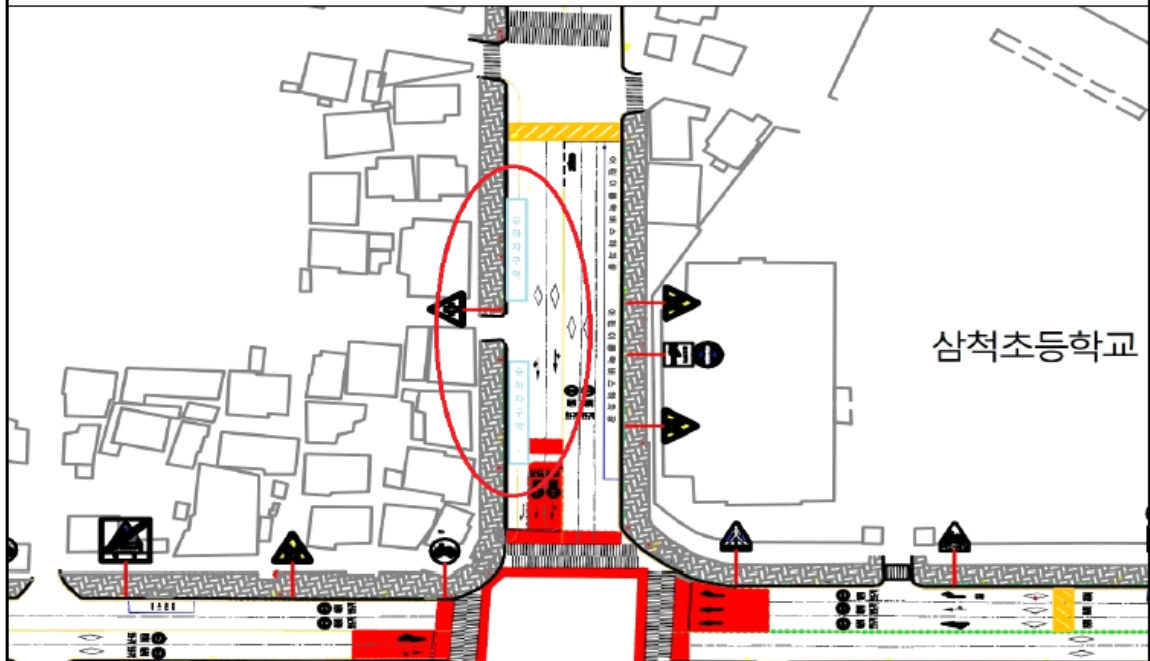
대상지역

삼척시 교통 598-9 일원

1. 위치도



2. 승하차구역 지정 도면



【정라초등학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대상지역

삼척시 정상동 469-15 일원

## 1. 위치도



## 2. 승하차구역 지정 도면

